

복음언약교단 중앙노회 목회자협의회 정관 및 세칙

모든 후속 수정 사항이 채택된 최종본은 2022년 5월 3일 CCMA 연례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조. 명칭

- 1항 이 조직의 명칭은 "복음언약교단 중앙노회 목회자협의회"로 한다.
- 2항 본 목회자협의회는 복음언약교단 목회자회의 일원이 되며, 목회자 지위와 권징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조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목적

- 2항 본 협의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호 목사의 인허, 안수, 파송을 포함한 중앙노회 내의 목회자 지위에 관한 모든 사안은 복음언약교단 헌법과 정관, 직제위원회 규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호 목회자협의회의 영적, 윤리적, 소명적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3호 언약교회 목회자 간의 친교의 유대를 강화한다.
 - 4호 신체적, 개인적 또는 영적 필요가 특별히 필요할 때, 목회자협의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 5호 기독교 사역자 후보 모집 및 선정을 지원하고, 대학 및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노스파크 대학교(North Park University)와 신학대학원과 협력한다.

제3조. 회원권

- 1항 본 목회자협의회의 회원은 복음언약교단 직제위원회의(Board of the Ordered Ministry) 규칙과 규정에 부합한 중앙노회 소속 모든 목회자로 구성된다.
- 2항 본 목회자협의회 회원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 1호 정회원: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목회자
 1. 언약교단 소속 영구 자격을 보유한 목회자
설교와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안수된 목사(OWSa)
설교와 사역을 할 수 있는 안수된 목사(OWSe)
기관 사역을 하는 안수받지 않은 사역자(CSM)
인준 선교사(CM)
 2. 자격 갱신을 통해 사역하는 목회자
사역 승인(ML)
이중직 목회 사역 승인(BVL)
해외 사역 승인(GSL)
 - 2호 준회원: 투표권과 직위가 부여되지 않는 목회자
 1. 안수되거나 안수받지 않은 무임목회자(사역하고 있지 않는 목회자)
 2. 안수되거나 안수받지 않은 휴직 중인 목회자
 3. 언약교단에서 인준받지 않았지만 언약교회에서 사역하는 타교단 소속 목회자
- 3항 은퇴목회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목회자 협의회의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1. 설교와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안수된 목사 (OWSa/R)
2. 설교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안수된 목사(OWSe/R)
3. 교단 선교사(CM/R)
4. 기관 사역을 하는 안수받지 않은 사역자(CSM/R)

은퇴는 은퇴 연령(예, 65세)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직제위원회에 자신의 지위를 “은퇴”로 옮겨달라는 요청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교단은 공식 은퇴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4항 연례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모든 정회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회원이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연례 총회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의무이다.

1. 목회위원회와 목회자협회의 결정에 따라 목회자협회 회계에게 연회비를 납부하고, 모든 사안에 좋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정회원의 의무이다. 단, 은퇴한 회원은 예외이다.
2. 목회자협회에서 회원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회원의 의무이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i. 회비 납부
 - ii. 현재(3년 이내의) 교단 프로필
 - iii. 소명 성장을 위한 방식 연간 완료
 - iv. ECC 동료들과의 정기적인 건강한 관계
3. 2년 연속으로 목회자협회에 대한 상기의 의무를 고의로 무시하는 회원은 징계될 수 있다.
4. 중앙노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유지(Good Standing) 상태이어야 한다.

제4조. 임원

- 1항 본 협회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의장, 부의장, 서기, 부서기, 회계이다. 의장과 부의장은 교단에서 인준되고 안수된 목회자이어야 한다..
- 2항 임원들은 노회장과 목회자협회 의장과 협의하여 목회자협회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3항 실행위원회 임원은 선출된 연례 총회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연례 총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목회자협회 직전회장은 임기 만료 후 1년동안 고문으로 활동한다.

제5 조 회의

- 1항. 본 협회회의의 연례 총회는 복음언약교단 중앙노회의 연례 총회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 2항. 사무총회는 본 정관과 세칙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국통상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에 따라 진행된다.
- 3항. 목회자협회 연례 회의에 등록된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사무총회 개최 정족수가 되고, 개최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의결 정족수가 된다.

제6조 수정안

- 1항. 본 정관은 직전 연례 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된 경우에 한해, 목회자협의회 연례 회의 출석 투표자의 3/2 찬성으로 개정한다.

세칙

제1조. 선거

- 1항.** 의장은 연례 회의 개최 최소 30일 전에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명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각 공석에 적어도 한 후보자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연례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두명의 후보자가 선호된다.
- 2항.**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실행위원회의 임원의 동일 직위 연임은 할 수 없다. 임원 선출은 시차를 두어 한 해에는 의장과 부서기를 선출하고, 다음 해에는 부의장과 서기를 선출하고, 그 다음 해에 회계를 선출한다.
- 3항.** 사임이나 사망에 의해 궐위(공석)되었을 때,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다음 연례 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수행한 사람은 위원회에 재선될 수 없다.

제2조. 위원회

- 1항.** 목회자 직제위원회는 선출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최소한 3명은 복음언약교단에 의해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도록 승인받은 안수받은 목사로 해야 한다. 한 명은 복음언약교단에 의해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도록 승인받은 안수받은 목사 또는 위임된 사역자로 해야 한다. 구성원 중 한 명은 노스팍 신학대학원의 전임 교수로 할 것을 권장한다.
회원은 목회자협의회 연례 회의에서 매년 2회 미만으로 만료되는 방식으로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사임이나 사망으로 인해 궐위(공석)가 될 경우, 다음 회기에서 한 사람을 선출해야 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수행한 사람은 위원회에 재선될 수 없다.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목회직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앙노회 노회장, 부노회장, 중앙노회 목회자협의회 의장이 된다.
중앙노회 목회자직제위원회 위원이 본 위원회의 고문으로 봉사해야 한다. 위원회는 복음언약교단의 목회자직제 규정과 본 협의회 의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 2항.** 다른 위원회는 연례 회의에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명한다.

제3조. 목회자의 지위와 징계

- 1항.** 안수, 파송, 사역 승인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토의 또는 결정을 위해 본 협의회 연례 회의에 회부되기 전, 목회자직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및 권고를 받아야 한다.
- 2항.** 본 협의회 서기는 목회직에 관한 연례 회의의 모든 권고와 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목회자직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3항.** 무분별함, 부도덕, 교리상의 오류, 비윤리적인 행동, 또는 복음언약교단에 대한 불충성으로 기소된 목사는 복음언약교단의 목회자직제 규칙과 세칙에 의거 징계를 받는다.

제4조. 회비

- 1항.**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본 협의회 연례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조 수정안

5항. 본 세칙의 개정은 본 협의회 연례 회의에서 출석 투표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